

**Q**uestion .....

현장에 터파기(백-호) 작업 중 6.25전쟁 때 유기되었던 폭발물(대전차지뢰-M15)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폭발물탐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상태 유·무를 확인 후 작업하고자 합니다.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?

**A**nswer .....

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(노동부고시 제2005-6호, 2005.3.17)별표 2 “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” 항목 4(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)에 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(타법 적용사항 제외)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현장내 폭발물 탐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은 발주자와 공사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집행하여야 할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.

**Q**uestion .....

병원 및 개인사정으로 제출한 조퇴계조차 받아주지 않는 회사에서 저를 지금 부서보다 더 힘든 부서로 발령을 내어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.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?

**A**nswer .....

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31조(구직급여의 지급요건)의 규정에 의거 실직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-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
  -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
  - ③ 이직사유가 회사의 경영난,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이거나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경우일 것
- 귀하가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직 후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한 후 수급자격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
**Q**uestion .....

산업안전보건관리비 3항목에 안전관리자 전용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수리비 또는 업그레이드(메모리 용량 추가 등)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예를 들면 요즘은 DATA 용량이 크다보니 각종 계획서 또는 교육용 자료(사진이나 그림)를 만들다 보면 컴퓨터 용량이 모자라 작업 중에 에러가 많이 발생되고 사용 중에 고장으로 수리비가 발생 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 A nswer

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(노동부고시 제2005-6호, 2005.3.17) 별표 2 『안전관리비 항목별사용』 및 항목 3(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등)에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·카메라·컴퓨터·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자 전용컴퓨터 및 프린터 수리비 등(업그레이드 포함)에 대하여도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.

## Q uestion

현장에서 작업시 안전교육(2시간)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작업자가 일이 있어 조퇴를 하거나 연·월차를 쓸 경우 받지 못한 안전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
## A nswer

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,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당해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에 근로자가 참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.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퇴, 연·월차 사용 등의 사유로 사업장에서 정한 일시에 안전보건교육을 참석하지 못하였다면 동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
## Q uestion

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2항 안전시설비 등에서 낙하·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등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이라 정의되어 있는데 수직보호망의 정확한 용도가 무엇이며 건물외부의 쌍줄비계의 외측에 수직으로 보호망을 설치하는 것도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.

## A nswer

『위험기계·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(노동부 고시 제2003-18호)』 제15장 제400조에서 수직보호망의 적용범위를 『건축공사현장에서 비계 등의 가설구조물 외측면에 설치하여 작업하는 쪽에서 볼트 등의 물체가 비계 등의 외부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보호망』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동 적용범위에 해당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수직보호망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. 

※ 노동부(www.molab.go.kr)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코너에서 발췌한 자료임.